

#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인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000
----------	------------

제안연월일 : 2023년 9월 6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 수정이유

- 개정안과 같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보장에 대한 근거 법령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할 경우, 대상 범위를 장애인으로만 한정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정보취약계층의 범위를 “장애인·고령자 등” 으로 규정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근거로 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정보통신접근성 보장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2. 수정주요내용

-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성 보장의 근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로 수정함(안 제3조의2).

#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의2제2항 중 “시장이”를 “시장은”으로 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lt;신 설&gt;</p>	<p><u>제3조의2(접근성 보장)</u></p> <p>①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때 정보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u></p> <p>1. <u>웹사이트</u></p> <p>2. <u>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u></p> <p>3. <u>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u></p> <p>4. 「<u>출판문화산업 진흥법</u>」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p> <p>5. <u>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지능정보서비</u></p>	<p>제3조의2(접근성 보장)</p> <p>① (개정안과 같음)</p>

스 및 지능정보제품

② 시장이 무인정보  
단말기를 설치·운영  
하는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  
제 등에 관한 법  
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무  
인정보단말기 등 정  
보통신에 접근·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한다.

② 시장은-----  
-----  
----- 「지능정  
보화 기본법」 제46  
조에 따라-----  
-----  
-----  
-----  
-----  
-----.

##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접근성 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때 정보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 ② 시장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 등 정보통신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u>제3조의2(접근성 보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때 정보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웹사이트</u></li> <li><u>2.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u></li> <li><u>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u></li> <li><u>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u></li> <li><u>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u></li> </ol> <p><u>② 시장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 등 정보통신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u></p>